

# 일부 일회용 면봉, 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검출 위생용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일부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제조사별 상위 랭크된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연령별) 성인용 24개, 어린이용 9개 / (재질별) 나무 11개, 플라스틱 12개, 종이 10개

글\_강성호 조사관(안전감사국 식의약안전팀)



**조사개요**

(조사대상)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

구분	조사개요			계
	나무 재질	플라스틱 재질*	종이 재질	
성인용	11	10	3	24
어린이용	-	2	7	9
계	11	12	10	33

\* PP 재질 6개, ABS 재질 1개, PVC 재질 1개, 4개는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로 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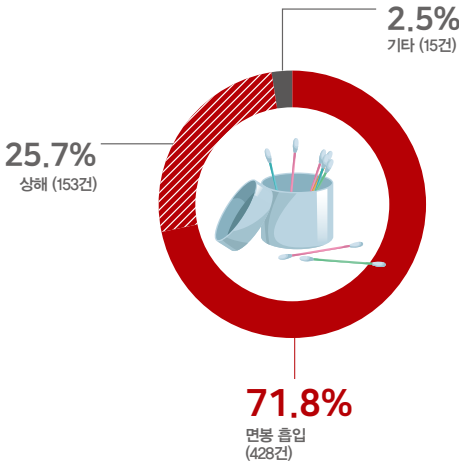
(선택기준) 제조사별 상위 랭크된 제품으로 선정  
(조사항목)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축의 강도, 면체와 축의 거리, 축간거리, 일반세균, 진균수, 형광증백제, 유해원소 용출·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포름알데히드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상의 10개 항목 및 포름알데히드)

## 6개 제품은 일반 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 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 불검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위해증상별 현황



### 나무 재질 면봉 전 제품, 부러짐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 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다.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15년) 207건 → (2016년) 175건 → (2017년) 214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 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1개 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표시

한편,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하고 있었다(1개 제품 중복).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 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의 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됐으나, 2020년까지 표시기준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기존 법률(성인용 면봉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용 면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실태(8개 항목)를 조사함.

### 일회용 면봉 기준·규격

항목	기준
성상	면체에 얼룩이나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함
면체와 축의 거리	축의 끝과 면체 끝의 거리가 1mm 이상
축간거리	면체가 덮여지지 않은 부분이 40mm 이상
면체와 축의 접촉강도	면봉을 지지판에 넣고 축에 500g 추를 매달아 30초간 유지(나무 재질 축에 한함)
축의 강도	축의 중앙에 1kg의 중력을 가하였을 때 1분간 유지(나무 재질 축에 한함)
일반세균	300CFU*/g 이하(면체에 한함)
진균수	300CFU*/g 이하(면체에 한함)
형광증백제	불검출(면체에 한함)

\* CFU(Colony Forming Units) : 세균 또는 진균을 세는 단위

### 나무 재질 면봉의 '축의 강도' 시험검사 결과

시험항목	제품 당 검사 시료 수	부러진 제품 수	제품 당 부러진 개수*
축의 강도	300개	11개 제품	최소 1개~최대 9개

\* 검사 시료 수 기준이 없어 제품 당 면봉 300개를 대상으로 시험검사함.